



“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”

수 신 회원사  
참 조 교육담당자  
제 목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 교육

- 1. 존경하는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을 개최하오니 귀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) 제 목 :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  
나) 일 시 : 2. 6(목) 14:00~17:00(3시간)  
다) 장 소 : 평택상공회의소 6층 컨퍼런스룸  
라) 교 육 비 : 회원사 무료, 비회원사 - 1인 7만 7천원  
※ 입금 : 신한은행 140-002-994544 (예금주-평택상공회의소)  
비회원사 접수 시 별도 안내 메일 발송 예정  
마) 강의내용 :

파트	제목	주요내용	비고
I	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	· 2020다247190,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· 통상임금의 기능 및 기존 통상임금의 개념 ·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및 이해	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이해
II	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 통상임금등에 미치는 영향	· 전합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 · 명절, 휴가 등 지급주기가 길고 재직여부만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통상임금성 · 법정수당과 양정수당의 구별 · 전합판결이 고정OT수당, 경영성과급 등 기업의 인건비 지급에 미치는 영향 · 통상임금 확대시 지급해야할 법정수당의 범위	전합판결과 기업의 수당지급 확인
III	새로운 분쟁양상 및 임금체계 개편등 기업대응 방향	· 새로운 분쟁사항 ·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 대응방향	기업의 대응방안 모색

바) 신청방법 : 홈페이지(<http://pyeongtaekcci.korcham.net>)→행사/교육란 온라인신청  
사) 신청기한 : 2025. 1. 31(금)“끝”

평택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선

(Kang-Sun, Lee)



담당 황예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육사업본부장 김도형  
시행 평상교 4호              (2025.1.9)  
우 18014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9길 37  
전화 070-4770-0721              전송 031-654-6409

사무처장 민경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회장 이강선  
/ <http://pyeongtaekcci.korcham.net>  
E-MAIL [pyeongtaek@korcham.net](mailto:pyeongtaek@korcham.net) / 공개